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연구회 세미나 자료



경 상 북 도 의 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연구회



목 차



I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연구회 세미나 계획 5

행사개요 / 주요내용/ 시간계획

II . 사업추진 현황보고 7

❖ 환경정책과

〈2021년 기후변화대응 주요업무 추진상황〉

❖ 에너지산업과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 주요 추진사업〉

III . 참고자료(관련조례) 37

❖ (환경정책과)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 (에너지산업과)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연구회 세미나 개최 계획

- ◇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을 논의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6. 25.(금) 14:00
- 장 소 :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15명 정도 (임미애 대표, 외부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업무보고(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과)
 -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종합토론
 -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 및 논의 등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분		
'21.6.25(금)	14:00		• 개 회	
	14:00 ~ 14:10	10'	• 인사말씀	연구회 대표
	14:10 ~ 14:40	30'	• 업무보고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과
	14:40 ~ 14:50	10'	• 종합토론	
	14:50 ~ 15:00	10'	• 총 평(연구회 대표)	
	15:00		• 해 산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대 표	임 미 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 원	김 영 선	건설소방위원회	
	김 준 열	건설소방위원회	
	김 상 현	기획경제위원회	정 책 연 구 위 원 회
	이 재 도	농수산위원회	정 책 연 구 위 원 회
	김 시 환	건설소방위원회	
	김 득 환	기획경제위원회	
	정 세 현	교육위원회	
	박 태 춘	문화환경위원회	
	박 차 양	농수산위원회	
외부전문가	김 해 동	계명대학교	



사업추진 현황 보고

2021년 기후변화대응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경 상 북 도
환 경 정 책 과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목표

경상북도 2050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2021년 분야별 주요 추진전략

탄소중립 대응

- ✓ 기후변화 대응 장기전략 수립
- ✓ 지자체 탄소중립 공동 대응
-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추진

온실가스 감축

- ✓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 ✓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 ✓ 소각시설 소각열 회수·재이용

기후변화 적응

- ✓ 8대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적응대책 마련

도민 참여

- ✓ 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운영
- ✓ 가정·상가 대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전개
-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021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1. 탄소중립 대응
2. 온실가스 감축
3. 기후변화 적응
4. 도민 참여 프로그램

1

탄소중립 대응

-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의 기후변화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 탄소중립 공동 노력 참여

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목 적 : 2050 경상북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
- 사업기간 : 2021. 1. ~ 2022. 4.
- 내 용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 실행목표 및 세부실행계획, 기후변화적응 추진방향 등
- 사 업 비 : 180백만원(국 90, 도 90)
- 사 업 량 :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②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 목 적 :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공동 노력으로 상향식 기후행동 확산
- 참여현황 : 경북도 및 17개 시군(21.5.31 기준, 전국 211개 지자체 참여) ※ '20.7.7 발족
- 추진사항 : '20.7 탄소중립 선언, '21.5 P4G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 세션 참여, 탄소중립 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공동 실천 과제 발굴, 지역 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 정보 공유 등

③ 2030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추진

- 내 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
- 구 성 : 38개 세부사업(건물 8, 공공 7, 수송 10, 농축산 6, 폐기물 7)
- 2030년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 BAU* 대비 온실가스 29.2% 감축

* BAU(Business As Usual) :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부문	2030년(단위: 만tCO ₂)			감축률(%) (A/C)	감축잠재량 달성률(%) (B/C)
	BAU(A)	감축잠재량(B)	감축목표량(C)		
건물	919	300	448	48.7	149.1
공공	167	41	38	22.6	91.8
수송	817	230	138	16.9	60.2
농축산	182	14	14	7.9	100.0
폐기물	172	50	21	12.5	43.2
합계	2,257	635	660	29.2	103.9

2

온실가스 감축

- 환경기초시설, 공공기관, 내연기관 자동차 발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

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사업내용 :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사업비 : 1,478백만원(국 739, 도 222, 시·군 517)
- 사업량 : 4개 시·군, 태양광 발전설비 5개소(총 650kw*) 설치
 - * 영천정수장(100), 의성안계정수장(100), 예천정수장(300), 봉화생활폐기물위생처리장(100), 봉화석포하수처리장(50)
- 추진실적 : 태양광발전시설 총 8개소 1,167.8kw

연도	시설명	용량(kw)	연도	시설명	용량(kw)
2013	고령하수처리장	50.4	2013	다산하수처리장	50.4
2013	성주하수처리장	50	2014	경산시공공하수종말처리장	99
2014	의성군가축분뇨처리시설	200	2016	구미시하수처리장	150
2016	구미인동가압장	50	2020	상주축산환경사업소	518

②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소유 또는 임차 건물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매년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활동 추진
- 대상기관 : 도 및 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795개 기관
- 감축목표 : '21년 기준배출량* 대비 32% 온실가스 감축 *158,760톤
- 추진실적 : '20년 온실가스 감축률 31.687%(목표:30%)
- 추진사항 : 청사 및 관용차량 에너지 소비량 절약 독려, 외부감축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추진

< 2020년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 결과 >

- (정량)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 목표달성(실적 31.687% / 목표 30%)
- (정량)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 목표달성(실적 9.9% / 목표 8%)
- (정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자치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 우수사례 선정 ※ 전국4개 광역시·도 선정

③ 전기자동차 보급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 승용 최대 1,300만원, 화물 최대 2,200만원, 이륜 최대 330만원 등
- 사업비 : 82,495백만원(국 50,180, 도 12,947, 시·군 19,368)
- 사업량 : 6,310대(승용 3,700 화물 1,400 이륜 1,200 버스 10)
- 추진실적 : 전기차 13,855대 보급, 전기차충전소 4,400기 설치(전국 5위)

④ 수소자동차 보급(2021년 신규사업)

- 사업내용 : 수소자동차 구입 시 대당 3,250만원 지원
- 사업비 : 3,250백만원(국 2,250, 도 300, 시·군 700)
- 사업량 : 100대(김천2, 성주3, 경주25, 구미25, 상주20, 경산24, 군위1)
- 향후계획 : 수소차 보급 지속적 확대 ※ 렌터카 등 대규모 민간수요확보, 공공기관 수요확대

⑤ 수소충전소 구축

- 사업내용 :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 사업비 : 12,000백만원(국 6,000, 민간(하이넷*) 6,000)
 - *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 : 수소차 확산을 목표로 수소 관련 13개 회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 사업량 : 4개소(상주, 구미, 경주, 경산)
- 향후계획 : 수소충전소 '22년 2개소(안동, 포항), '23년까지 총 11개소 구축

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5등급경유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 * 5등급경유차 : 2005.12.31.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비 : 46,482백만원(국 27,889, 도 5,578, 시·군 13,015)
- 사업량 : 29,050대
 - ※ (경북) 자동차등록 1,486,529대/경유차 668,326대/5등급경유차 160,431대('21.5월기준)

7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액* 90% 지원(자부담 10%)
* 장치가액 :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280만원 ~ 650만원
- 사업비 : 32,572백만원(국 16,286, 도 4,886, 시·군 11,400)
- 사업량 : 8,564대
- 추진실적 : ('19년) 850대, ('20년) 1,510대 ※ '22년 계획 : 14,396대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사업내용 : 환경기초시설(소각장)에 소각열회수시설, 태양광시설 등 설치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5,940백만원(국 550 도 165 군 385)
- 사업량 : 1개소(성주소각장)
* 소각폐열활용 마을공동재배온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추진실적 : 총 3개소, 사업비 16,314백만원

시설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경주소각장	6,300	2015~2019	다목적캠핑장, 소각열 공급 설비 등
영천소각장	4,814	2015~2020	태양광발전(300kw), 저온저장고 설치 등
군위소각장	5,200	2017~2021	마을공동재배온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9 맑은누리파크 소각폐열 및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발전 사업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증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처리시설 자체 사용, 잉여전력 판매
- 시설용량 : 510톤/일(생활폐기물 390, 음식물류폐기물 120)
- 발전량 : 전기 6 ~ 14 MWh 생산 ※ 1MW→2천5백가구 공급 가능
* 발전여열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온수공급 예정

3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하여 자연·인위적 조절을 통해 피해 완화 또는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행위

①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

- 계획기간 : 2017 ~ 2021
- 구 성 : 8개 부문* / 14개 추진전략 / 26개 실천과제 / 74개 세부사업
 - *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농·축산업, 산림/생태계, 해양/수산업, 에너지, 교육/홍보
- 추진사항
 -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 및 이행평가 실시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용역비 : 66백만원, 사업기간 : 2021.1. ~ 12.

②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목 적 :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
- 사업내용 :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1 ~ 2022(2년간)
- 총사업비 : 26,667백만원(국 16,000 도 3,200 시 7,467)
- 사 업 량 : 2개 시(포항, 상주)

③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 마련 → 기후변화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
- 사 업 비 : 1,540백만원(국 770, 도 231, 시·군 539)
- 사 업 량 : 4개 시·군(포항, 구미, 청도, 예천)
 - 포항·청도·예천 : 기후친화형 어린이시설 설치(그늘막, 쿨링포그 등)
 - 구미 : 동네정원 조성(벽면녹화, 조경식재, 쉼터 등)

4

도민 참여 프로그램

-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① 탄소포인트제 운영

- 사업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5%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 제공
- 사업비 : 938백만원(국 469, 도 140.7, 시·군 328.3)
- 참여대상 : 개인(가정, 상업시설), 단지(150세대 이상 아파트, 학교 등)
- 인센티브 : 상하반기 2회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 포인트 당 1~2원

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사업내용 :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시 인센티브 제공
- 사업비 : 36백만원(국 18, 도 5.4, 시·군 12.6)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제외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 사업내용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가정·상가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효율적 에너지 사용방안 컨설팅 및 홍보·계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 친환경 명절 보내기, 기후변화주간, 차 없는 날, 쿨·온맵시
- 사업비 : 301백만원(국 144, 도 75.1, 시·군 81.9)
- 추진계획 : 컨설팅 2,500건, 컨설턴트 80명 운영, 캠페인 전개

④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사업내용 :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사업비 : 100백만원(국 50, 도 22, 시·군 28)
- 교육내용 : 체험전시실, 저탄소 생활실천교육, 어린이 기후변화교육 등
- 지정현황 : 5개소(도, 포항, 구미, 상주, 고령)

부문	사 업 명	사업부서	사 업 명	사업부서
건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지원 사업	환경정책과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사업	건축디자인과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민생경제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건축디자인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에너지산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환경정책과	승강기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공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환경정책과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사업	에너지산업과		
수송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환경정책과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환경정책과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환경정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환경정책과
	수소차 보급 사업	환경정책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	도로철도과
	친환경LPG차 보급 사업	환경정책과	녹색 기간교통망 철도시설 확충 사업	도로철도과
농축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과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실증 사업	에너지산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사업	에너지산업과
폐기물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	환경정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책과
	폐기물 최종처분량 저감 사업	환경정책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환경정책과
	포항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SRF) 사업	포항시 자원순환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환경정책과
	맑은누리파크 소각열 회수 사업	환경정책과		

참고2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구성

부문	추진전략	실천과제	사업부서
I. 건강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및 감염병 관리	가. 수인성 질환 및 전염병 관리 강화	보환연, 보건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나.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	
		다. 호흡기 질환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 강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여건 확대	가.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 지원대책 추진	
		나.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강화	
II. 재난/재해	방재체계 구축 및 활용 극대화	가. 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나. 재난/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구조적 방재사업 확대	가. 자연재해 예방사업	
III. 물관리	수질·수생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가. 하천 수질 감시 및 관리 강화	보환연, 환경안전과, 맑은물정책과
		나. 기후변화 대응 수질악화 최적관리	
	지역 맞춤형 홍수 및 가뭄 적응	가. 안정적 수자원 확보	
		나. 물 산업 네트워크 구축	
IV. 농·축산업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기술 보급	가. 기후변화 적응 농축산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원,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나. 신품종 및 대체작목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피해 최소화	가. 농업재해 예방대책 추진	
		나. 축산업 재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V. 산림/생태계	산림/생태계 기능 및 회복력 유지·증진	가. 조림 및 숲 관리 강화	산림자원과, 환경정책과
		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산림피해 예방 및 감시 강화	가.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나. 산림병충해 예방 사업 추진	
VI 해양/수산업	연안 해수면 상승 대응	가. 연안 침식 대응	해양수산과 독도해양정책과
	해양 생태환경 개선 강화	가. 수산업 생산성 증진	
		나.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저감	
VII. 에너지	기후변화 적응형 에너지 관리	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급시설 취약성 관리체계 구축	에너지산업과 환경정책과
		나. 적응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VIII 교육 및 홍보	기후변화 교육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가.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홍보 확대	환경정책과

참고3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포항시 「숨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파크 조성」

- 추진배경
 - 노후 철강산단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민원 다발
 - 온실가스 과다 배출, 폭염, 열섬현상 등 주민 건강 취약성 악화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0억원(국 60, 도 12, 시 28)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일원
 - 사업내용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대규모산단 스마트 분사시스템	· 스마트 마스트 분사시스템, 환경측정 및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테마별 친환경 체험 및 치유정원	· 기후위기적응교육체험터 자연테마 치유정원 미세먼지 대응 휴게 쉼터 조성
숨쉬는 물순환 녹지도시	· 빗물관리시설 띠숲, 녹지대 및 쿨링포그 설치
물순환 환경생태 조성	· 냉천 재이용수 쿨링 시설 미스트 분사 및 녹지 등에 공급
ICT기반 재활용수거 거점센터 구축	· 재활용수거 거점센터, ICT 시스템 구축

□ 상주시 「북천 따라 그린 스마트 상주」

- 추진배경
 -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취약
 - '20년 초미세먼지 오염 수치 도내 최고($24\mu\text{g}/\text{m}^3$), '18년 도내 폭염 최장(31일) 지속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66.67억원(국 100, 도 20, 시 46.67)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사업위치 : 상주시 냉림동 일원
 - 사업내용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기후변화대응계획	· 클린로드, 쿨링포그, 그린인프라 구축
물순환개선사업	·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조성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	· 소규모 메가스테이션 조성
도시 소생태계 조성	· 생태계류 조성
스마트 탐방 체험	· 생태휴식공간, 스마트 자전거 도로 조성
스마트 환경교육	· 스마트 환경교육 시설 구축

경상북도 에너지정책 주요 추진사업 보고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I. 경상북도 에너지 발전 현황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2.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3.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장비 지원사업
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개발실증사업
6.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III. 참고자료

I . 경상북도 에너지 발전 현황

경상북도 에너지 발전현황

에너지 및 전력수급 계획

정 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 8월)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 12월)
	'35년까지 신재생 전력생산 11% 목표, 現 8.1%		'34년까지 신재생 전력생산 25.8% 목표(재생E 22.2%, 신E 3.6%)
경 북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14. 3월)	→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20. 5월)
	신재생 전력생산 ('14) 8.7% → (' 19) 11%		신재생 전력생산 ('25) 12.8% → (' 40) 35%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

(단위 : MW, GWh, %)

구 분		합 계		신재생		원자력		화 력				양 수		기타 (폐기물)	
								석 탄	유 류	가 스					
발전 용량 (MW)	전 국	131,538 (100)		19,283 (14.7)		23,250 (17.7)		37,003 (28.1)	3,864 (2.9)	39,550 (30.0)		4,700 (3.6)		3,888 (3.0)	
	경북(4)	15,171		2,007		10,000		156	19	362		1,400		1,227	
	전국대비	100 11.1		13.2 10.4		65.9 43.0		1.1 0.4	0.1 0.5	2.4 0.9		9.2 29.8		8.1 31.6	
발전량 (GWh)	전 국	577,853 (100)		32,672 (5.7)		145,910 (25.3)		229,422 (39.7)	3,501 (0.6)	144,441 (24.9)		3,458 (0.6)		18,449 (3.2)	
	경북(2)	84,996		2,644		71,823		856	69	1,874		1,235		6,495	
	전국대비	100 14.7		3.1 8.1		84.5 49.2		1.0 0.4	0.1 2.0	2.2 1.3		1.5 35.7		7.6 35.2	

※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9년 한국전력통계(20.5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GWh, %)

구 분		합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연료 전지	석 탄 가스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전력 발전 기준	전 국	32,672 (100)		2,285 (7.0)	1,031 (3.2)	12,996 (39.8)	-	2,679 (8.2)	2,791 (8.5)	474 (1.4)	-	-
	경북(7)	2,644		13	-	1,602	-	774	238	-	-	-
	전국대비	100 8.1		0.5 0.6		60.6 12.3		29.3 28.9	9.0 8.5			0.6 0.2

※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1월)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2.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3.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장비 지원사업
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개발실증사업
6.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1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 ◆ 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중점산업 육성
- ◆ 산·학·연 집적, 기업지원,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025(6년간)
- 위 치 : 영덕(산업융합거점지구), 포항(연구교육거점지구)
- 총사업비 : 10,312억원(국 1,138, 지 1,072, 민 8,102)
 - ※ 발전단지(8,355억원), 단지조성(1,200억원), 기술개발·기업지원 등(757억원)
- 사업내용



노후 풍력단지의 리파워링을 통한 대형화 및 사업화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정책개발, 기업유치, 입주지원

■ 추진상황

- '20. 8.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고시(산업부 고시 제2020-140호)
- '21. 4. : 조성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1.4~'22.1)
- '21. 5. : 「산악지형 노후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기술개발 사업」 공모 선정
「경북지역 풍력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공모 선정

■ 향후계획

- '21. 7. :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보조금 신청
- '21.~'25. : 융복합단지 조성추진(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발전단지 조성)
 - 지원센터 구축('21~'23), 리파워링기술개발 R&D ('21~'24), 인재양성('21~'25)
 - 산악지형 테스트베드 구축('22~'23), O&M센터('21~'24), 리파워링단지조성('22~'24)
- ※ 주민수용성 확보 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 ※ 리파워링발전단지 120MW 완공 시 10만가구(4인기준)/년 전기공급

2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산업 기반 구축
-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7(8년간)
- 위 치 : 포항시 블루밸리 산단 외
- 총사업비 : 1,863억원(국704, 지606, 민553)
 - ※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0여 년간('11.~현재)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
-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및 전문 기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성능평가를 통한 국산화 기반 마련
 - 수소연료전지 국산화 제품 시범단지 조성



■ 추진상황

- '11. 8. ~ '14. 6. : 연료전지테스트베드 구축(포스텍, 포항금속소재진흥원, 포항TP)
 - ※ 사업비 142.1억원(국비 51.4, 도비 24.5, 포항시 24.5, 민자 41.7)
- '19. 5. ~ 8. : 실증단지 모델 사전타당성 조사 공모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포항TP)
- '19. 10. : 포항TP 제5벤처동 인증센터 준공(100억원, 지상 5층 6,076m²)
- '19. 12.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2.2억원, 18개월)
 - ※ 연료전지(포항), 생산(전북, 인천), 저장·운송(강원), 모빌리티(울산)
- '20. 5. :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43억원, 5년간)
- '20. 6.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MOU체결
- '20. 7. :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 10. :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예타사업 심사 결과 재심의
- '21. 1. :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MOU체결(1,000억원 20MW)
- '21. 6.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타 신청(산업부→기재부)

■ 향후계획

- 주관기관(포항TP)과 협력하여 기재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심사 적극 대응

- ◆ 수소연료전지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장비 고도화를 통한 제품 국산화 및 안전성 확보하여 연료전지 산업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위 치 : 포항 테크노파크 내(제5벤처동)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80, 지방비 20)
- 참여기관 : 도, 포항TP
-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고체산화물 SOFC) 제품·부품 인증 및 평가장비 32종

연도	구 분	사업비	사 업 내 용
2021	검인증장비(2종)	12억원(국 10, 지 2)	1KW, 10KW SOFC 스택 평가 장비 가스, 수소, 공기, 질소 전압, 전류 측정 제품의 성능, 안전 평가 장비
2022	전기안전성능(28종)	50억원(국 40, 지 10)	PEMFC, PAFC 소형~대형 평가 장치 계통연계 가스분석기 스택 리크 평가장치 인버터 성능평가 KS인증 제품시험위탁을 위한 장치
2023	환경영향신뢰성(2종)	38억원(국 30, 지 8)	SOFC 대형 평가 장치, 항온항습시설(2종)

■ 추진상황

- '20. 1 :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사업 운영('20~'22, 18억원)
- '20. 10 :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사업 국비 예산 확보('21~'23, 100억원)
- '21. 2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신청 ('21. 7월 중 지정 예정)

※ 인증센터 구축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검인증 인프라 구축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 제품시험 위탁공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험 장비구축

※ 관련근거 : 「산업표준화법」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제8장)

■ 향후계획

- '2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KS인증 제품시험 위탁 공인기관 신청

- ◆ 2014년부터 시범도입 되어 일정구역 내 주택 등 모든 건물에 에너지수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 지원
- ◆ 에너지자립을 통한 전기, 냉난방 등 도민 에너지비용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월 (계속사업)
- 사업량 : 14개 시군, 4,925개소(주택 4,188, 건물 737)
 - ※ 주택,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건물별 지원 사업을 보완한 종합지원 사업
- 사업비 : 450억원(국비 210, 도비 63, 시군 101, 기타 76)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2%(도 40, 시군 60), 자부담 18%
 -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주관 컨소시엄에 직접 지급
- 사업내용 : 일정구역 내 모든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 융복합 설치 지원
- 추진방법 : 공공기관·전문기업·민간 등 합동 컨소시엄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20. 6. : '21년 공모사업 신청(도 ⇒ 한국에너지공단)
- '20. 7~9. : 공개평가 및 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 도)
- '21. 1. : 에공단·컨소시엄 간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추진실적

- 사업비 : 941억원(국비 441, 도비 153, 시군 235, 기타 112)
- 사업량 : 8,188개소(주택 7,197, 건물 991)
 - 에너지원(개소) : 태양광 5,531, 태양열 2,036, 지열 612, 풍력 9

2020년까지 추진실적

구 분	'14~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사업비(백만원)	14,492	7,738	16,134	20,952	34,753	94,069
사업량(개소)	631	575	1,421	2,293	3,268	8,188

■ 향후계획

- '22년도 공모사업 신청 및 공개평가 대응
 - 추진일정 : 도 자체평가(6.24)→사업신청(6.30)→공개평가(7~8월)→선정(9월)

- ◆ 스마트팜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및 지능형 관리시스템 개발·실증을 통해 경북형 비즈니스모델 보급 확산
- ◆ 에너지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으로 수익창출 극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 사업개요

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실증사업

- 사업기간 : '20. 9. ~ '23. 8월 (3년간)
- 사업위치 :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일원(1천평 정도)
- 사업비 : 35억원(도비 14, 시군비 12, 기타 9)
- 사업내용 : 태양광·열, 지열 등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및 스마트팜 연계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실증
- 사업전담기관 : (재)포항테크노파크
- 추진상황
 - '20. 7.~9. : 실증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주관) 세한에너지, (참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대학교, 영천시
 - '20. 10. : 협약체결(포항TP, 컨소시엄) 및 사업 착수
 - '21. 6. : 시스템 기본구상 및 지반조사 중, 토지매입 등

②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공모)

- 사업기간 : '20. 5. ~ '22. 12월(2년 9개월)
- 사업위치 : 포항시 흥해읍 망천리 일원(1천평 정도)
- 사업비 : 49억원(국비 37, 참여기업 12)
- 사업내용 : 태양열을 활용한 계간축열식 열공급시스템 개발실증
※ 여름철 잉여 태양열을 특수 축열시설에 저장했다가 겨울온실에 이용
- 수행기관 : (주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 경북도, 세한에너지, S&G에너지, 대전대학교
- 추진상황
 - '20. 3.~4. : 농식품부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 '20. 5.~ : 사업착수, 지반조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완료
 - '21. 6.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 착공

■ 향후계획

- 국비지원 건의를 통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 ◆ 道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FTA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5년(10년)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 ※ 개인 : 100kW기준 1.4억원까지 지원, 단체 : 500kW기준 7억원까지 지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1.0%,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균등분할상환
- 조성금액 : 390억원('16~'18년 각 50억원, '19~'21년 각 80억원)

■ 추진상황

- '15. 4.24 : 경북도, 한수원(주) REC(공급인증서) 우선구매 MOU 체결
- '15. 11월 :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조례 제정(전국 최초 시행)
- '16. 4월 :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관리업무 위탁(농협)
- '18. 8월 : 2019년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증액편성(50→80억원)
- '19. 8월 : 2020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융자금액 변경
 - ※ 개인 100kW기준 1.6억원→1.4억원, 단체 500kW기준 8억원→7억원
- '20. 9월 : 기금존속기한 5년 연장(조례 개정)

■ 집행현황 ('21.5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신 청	선 정	집 행 액	이 월 액	포 기	비 고
합 계	778개소	51,886(400)	26,209(200)	6,606(54)	7,902(46)	
2016년	33개소	3,446(21)	2,036(11)	152(1)	1,258(9)	
2017년	63개소	6,408(39)	4,452(28)	429(3)	1,527(8)	
2018년	125개소	8,072(56)	3,913(28)	2,090(14)	2,069(14)	
2019년	136개소	9,752(70)	6,283(47)	1,386(12)	2,083(11)	
2020년	202개소	11,871(103)	8,357(75)	2,549(24)	965(4)	
2021년	219개소	12,337(111)	1,168(11)*			

* 11개소 1,168백만원 중 '20년 이월분 10개소 1,038백만원 포함

※ 선정현황 : 400개소, 51,886백만원/ 집행현황 : 230개소, 30,266백만원

III. 참 고 자 료

참고1 에너지원별 주요 발전소 현황('21.5월 기준)

원 별		발전소명	위 치	설비용량	상업운전	사 업 자
		합 계		15,813.7MW		
신재생		발전사업설비 9,433개소	22개 시군	2,614.4MW		
		자가용발전설비 (‘19년 통계자료)		77.9MW		
		폐기물에너지 (‘19년 통계자료)		1,185.2MW		
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주시 양남면	4,100MW (5기)	1997.07.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발전소	울진읍 북면	5,900MW (6기)	1988.09.	한수원(주)
화 력	석탄	구미열병합발전소	구미시 공단2동	전기 97.1MW (증기 850톤/h)	1992.06.	GS E&R
		김천열병합발전소	김천시 응명동	전기 59MW (증기 560톤/h)	2013.07.	김천 에너지(주)
	유류	울릉도내연발전소	울릉군 울릉읍	8MW	1980.	(주)제이비씨
		남양내연발전소	울릉군 서면리	10.5MW	1995.	(주)제이비씨
	가스	안동LNG발전소	안동시 풍산읍	361.6MW	2014.03.	한국남부 발전(주)
양수		예천양수발전소	예천군 용문면	800MW (400MW×2)	2011.07.	한수원(주)
		청송양수발전소	파천면 신흥리	600MW (300MW×2)	2007.10	한수원(주)

참고2 태양광발전사업 현황('21.3월 기준)

- 道 허가현황 : 523개소 1,228.6MW
 - 가 동 : 99개소 224.7MW
 - 건설중 : 4개소 8.9MW
 - 준 비 : 208개소 511.6MW
 - 취 소 : 212개소 483.4MW
 - 연도별 허가 현황(5년)
 - '21년도 : 1,127건 118MW (도 7건 12.1MW, 시군 1,120건 110MW)
 - '20년도 : 3,785건 462MW (도 5건 8.5MW, 시군 3,780건 453MW)
 - '19년도 : 3,363건 677MW (도 30건 66MW, 시군 3,333건 611MW)
 - '18년도 : 7,509건 2,819MW (도 148건 367MW, 시군 7,361건 2,452MW)
 - '17년도 : 4,068건 1,407MW (도 60건 135MW, 시군 4,008건 1,272MW)
 - '16년도 : 1,239건 634MW (도 134건 320MW, 시군 1,105건 314MW)
- ※ 용량별 허가기준 : 산업부 > 3MW ≥ 道 > 1.5MW > 시군

산업부·도·시군	허가 현황 (kW)		사업개시 현황 (kW)		비 고
	개소	용량	개소	용량	
합계	23,657	7,292,377	9,372	2,003,883	용량기준 27% 설치
산 업 부	16	327,513	5	31,998	
경상북도	523	1,228,610	99	223,585	
포항시	444	136,402	214	43,768	
경주시	813	161,083	365	65,109	
김천시	1,364	274,471	655	118,388	
안동시	1,605	337,662	618	97,988	
구미시	1,565	295,465	967	133,675	
영주시	1,936	449,800	681	109,855	
영천시	1,205	289,431	541	110,867	
상주시	3,116	877,374	1,143	286,966	
문경시	695	191,283	308	63,737	
경산시	701	105,201	416	54,733	
군위군	760	241,313	361	98,124	
의성군	1,594	613,274	464	130,987	
청송군	347	87,912	151	18,784	
영양군	854	209,463	193	31,350	
영덕군	730	226,127	268	73,025	
청도군	268	53,439	114	14,610	
고령군	388	93,567	153	20,592	
성주군	477	95,709	323	58,327	
칠곡군	565	85,969	328	38,728	
예천군	1,674	323,541	689	107,340	
봉화군	1,839	533,994	260	61,256	
울진군	178	53,774	56	10,091	

참고3

풍력발전사업 현황('21. 5월 기준)

- 허가현황 : 83개소 1,320기, 3,089.3MW (※사업비: MW당 20억원)
- 가동 : 16개소 172기, 421.2MW
 - 준비 : 59개소 1,080기, 2,515.2MW
 - 건설중 : 2개소 33기, 139.8MW
 - 취소 : 6개소 35기, 13.1MW
- ※ 용량별 허가기준 : 산업부>3MW≥道>1.5MW>시군

※ 발전사업 허가 단계의 발전기수 및 발전용량은 도시계획 인허가 및 기술발전에 따라 변경

시군명	발전사업 허가현황			추진현황									비고
	개소	수량 (기)	발전용량 (MW)	가동중			건설중			준비중			
				개소	수량 (기)	용량 (MW)	개소	수량 (기)	용량 (MW)	개소	수량 (기)	용량 (MW)	
합 계	83	1,320	3,089.3	16	172	421.2	2	33	139.8	59	1,040	2,515.2	
포항시	21	582	795.0	3	9	22.9				17	572	769.1	초소형 333기 취소1기
경주시	10	55	179.9	5	23	53.6				5	32	126.3	
김천시	1	8	20.0							1	8	20.0	
안동시	1	5	18.4							1	5	18.4	
영천시	4	44	130.0							4	4	130.0	
군위군	9	34	113.1	1	7	11.6				6	25	98.0	취소 2기
의성군	2	29	150.0							2	29	150.0	
청송군	4	66	238.2	1	6	19.2	1	19	79.8	2	41	139.2	
청도군	2	9	40.8							2	9	40.8	
영양군	9	188	501.2	4	88	220.9				4	99	277.2	취소 1기
영덕군	14	225	581.7	1	24	39.6				11	170	538.6	취소 31기
봉화군	3	43	189.0				1	14	60.0	2	29	129.0	
울진군	2	31	131.4	1	15	53.4				1	16	78.0	
울릉군	1	1	0.6							1	1	0.6	시범 사업

※ 설치위치가 2개 이상의 시군을 포함하는 허가건은 주된 시군의 현황으로 표기함



참 고 자 료(관련조례)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제정) 2018-02-26 조례 제 40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건강 하고 쾌적한 삶과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이산화탄소(CO₂)
 - 나. 메탄(CH₄)
 - 다. 아산화질소(N₂O)
 - 라. 수소불화탄소(HFCS)
 - 마. 과불화탄소(PFCS)
 - 바. 육불화황(SF₆)
3.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감축”이라 함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5. “기후변화 대응”이라 함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내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7.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8. “승용차 요일제”란 도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도민자율운동을 말한다.
9. “친환경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제6조(지방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이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감축 목표 설정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 수립

③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감축수단 등을 구체화하고 이행성과 점검체계를 포괄하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시에는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세부이행계획은 경상북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 없는 날)①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① 사업자 및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적절한 정비와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①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운전 확산운동 전개)도지사는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지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경상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경북 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경북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21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민·사업자·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활동, 해외조림·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소관부서 :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락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제정) 2007-04-16 조례 제 2972호
(일부개정) 2009-04-23 조례 제 30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722호
(일부개정) 2019-03-11 조례 제 4161호
(일부개정) 2020-09-24 조례 제 437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제2조 (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시책 강화
4.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5.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6.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 및 도민 참여
7. 에너지 안전 및 복지사업 <신설 '15.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15.12.31.>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5.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6.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 또는 육불화황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10.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15.12.31.>
11.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도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2.31.>
12. “산업 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수송 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4. “건물 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공공 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제3자의 에너지이용 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5.12.31.>
17.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8.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9.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0.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는 에너지 이용의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도는 도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도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도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위원회 운영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⑥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제6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정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09.4.23, '11.5.30, '15.12.31, 2019. 3. 11., 2020. 9. 24.>
- ③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담당 실장 또는 본부장·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3.9.16>
- ④위원은 도 소속공무원, 도의회 의원,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
-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 또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정책의 개발·평가·자문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부문별 에너지 정책

제11조 (산업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③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④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송부문) ①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건물부문) ①도지사는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등 에너지절약 관련기관에 설계서의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5.12.31.>

②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개정 '15.12.31.>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 '15.12.31.>

4.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②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

제 4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설치의무기관장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이 설치의무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제·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시책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5.12.31.>

1.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
2.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3. 월드 그린에너지 포럼
4. 삭제 <2019. 3. 11.>
5.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6. 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사업
7. 에너지 기업육성 특성화 사업
8.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 사업
9.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지원
10. 가스안전시설 지원 사업
11. 친서민 생활에너지 복지 사업
12. 에너지관련 교육·홍보·행사 등 시책 사업 <개정 2019. 3. 11.>
13. 녹색기업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14.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개정 2019. 3. 11.>
15.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16.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17. 에너지 융복합 구축 사업 <개정 2019. 3. 11.>
18.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
19. 원자력인력양성 지원 사업
20. 원자력클러스터 포럼
21. 원자력산업 대전
22. 원자력주민수용성 제고 사업
23. 원자력공모 지원 사업
24. 시·군 에너지시책 사업
25. 청년 정착 에너지 지원 사업 <신설 2019. 3. 11.>
2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사업 <신설 2019. 3. 11.>

2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3. 11.>

③도지사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에너지 대상) ①도지사는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매년 "경상북도에너지대상"(이하 "에너지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에너지대상은 기관·단체·기업부문과 개인유공자 및 우수 시군에 대하여 선정·시상 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 상장을 수여 할 수 있으며,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④수상자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